

대법원

제 3 부

판결

사건 2024도81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3노2796 판결

판결선고 2025. 12.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017. 6. 19.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이와 달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정보공개법상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때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

53770 판결 참조).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을 전제로 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도 적용될 수 없다.

나. 원심이,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라고 보고, 피고인이 그로부터 위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2017. 6. 20.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 △△대리점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이 ○○○ △△대리점으로부터 이 사건 통신사 영상을 제공받은 행위에 대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거기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2017년 6월 하순경, 2019. 7. 22. 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개인정보의 목적 내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석준 _____

대법관 이홍구 _____

대법관 노경필 _____

주심 대법관 이숙연 _____